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00,419,505	6,012,585
일반회계	177,215,554	5,316,467
특별회계	23,203,951	696,119
기타특별회계	23,203,951	696,119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,835,196	115,056
수질개선특별회계	13,810,413	414,312
의료보호특별회계	360,578	10,817
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	2,012,157	60,365
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	20,000	600
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	3,165,607	94,968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24,932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